■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71-601.
http://doi.org/10.17948/kcs.2023..98.571

한국전쟁기 포로노래의 역할 : 포로 통제수단으로서의 금지곡*

이경분(李京粉)**

목 차

1. 시작하며: 냉전에서 달라진 포로노래의 성격
2.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금지곡
3. 금지곡으로 촉발된 봉암도의 유혈사건 (1952. 12. 14.)
4. 용초도 사건: 허용된 5곡과 포로들의 항의
5. 포로 통제수단으로서의 가창 제한
6. 끝맺으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전쟁 중 포로들의 노래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전제하에 유엔측 수용소 당국이 강력한 포로 통제를 위해 제정한 금지곡 규정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포로들에게 금지된 노래는 무엇이지, 금지곡 규정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탐구하였다. 또한 금지 곡목의 작은 변화에서 나타나는 수용소정책과 금지곡 규정의 애매함도 분석하였는데, 그 예로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봉암도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용초도 수용소에서는 금지곡 규정의 애매함을 개선한 5곡 허용규정을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노래는 포로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 중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무장 해제당한 포로들이 수용소 당국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노래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지만, 유엔군측의 노래에 대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2041840)
**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과잉 반응'은 포로의 노래가 그 이전의 전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높은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기의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특징 중 하나는 금지곡 제정과 이로 인한 유혈사태에서 보여주듯이, 노래를 둘러싼 수용소 당국과 포로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봉암도, 용초도, 거제도 포로수용소, 금지곡, 포로의 노래, 포로의 항의문, 한국전쟁.

1. 시작하며: 냉전에서 달라진 포로노래의 성격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수용소든 있는 보편적인 일이다. 수용소 당국에 저항하기 위해 포로들이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전쟁기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경우는 이전에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특별하다. 1951년 휴전협정 논의가 시작되고 1952년 1월 포로의 '자유송환'이라는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면서 포로들의 송환과 비송환을 결정하는 유엔측의 포로심사에 반대하는 '친공'포로들의 저항은 최고조에 달했다. 포로들의 노래는 단순히 지루한 억류 생활을 견디기 위한 기본적인 오락의 역할을 넘어서 이전에 보기 힘든 이념대립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한 '송환포로'와 '비송환포로'를 분리·수용한 이후 노래는 심각한 유혈사태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52년 12월 14일 송환포로가 분리 수용된 '봉암도'(유엔군 포로수용소 1C)에서 전체 한국전쟁 기간 중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유혈 사건 중 최대 규모인 약 350여명의 사상자[1]가 발생한 것도 포로들의 노래 때문이었다. 이 믿기 어려운 사건은 한국전쟁 연구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의 포로연구에서도 낯선 일로 보인다. 노래로 인해 엄청난 유혈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수용소 당국이 포로들에게 '금지곡'을 지

1)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사망한 포로의 수는 85명, 중상이 113명, 경상 103명으로 알려져 있다(김학재,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사림』 36, 수선학회 2010, 169면). 하지만, 1953년 2월 2일 작성된 미군의「경과보고 검토문」에는 87명 사망, 226명 부상, 총 3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결론짓는다. RG 338, Korea Communication Zone, 1951-52, Entry NC 338-84, Box 509, Board Proceedings on Incident Occurring, 14 December 1952,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 p. 7.

정하고 이를 어길 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한국전쟁기 포로의 노래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논문「6.25 전쟁기 거제포로수용소의 음악: 냉전이데올로기와 노래」가 첫 연구인데, 노래의 역할을 포로간의 오락과 위로 수단, 심리전의 도구, 폭력을 은폐하는 수단 그리고 '투쟁 무기'의 역할 등 4가지로 서술하고 있다.[2] 하지만, 여기서는 수용소 당국이 제정한 금지곡의 영향과 역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금지곡으로 인한 '봉암도 유혈사태'에 대한 언급도 조성훈과 김학재의 연구가 있을 정도로 드문 것이 사실이다.

조성훈의『한국전쟁과 포로』에는 포로의 포로가 된 '돗드(F. Dodd)소장 사건' 이후에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만 노래가 허용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불러선 안 되는 금지곡 7곡과 함께 공격적이고 정치적인 노래는 금지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다.[3] 반면 김학재의 논문「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사건들을 중심으로」에서는 봉암도 유혈사태를 미군의 '반공 오리엔탈리즘과 배후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포로들이 노래로서 강경 진압에 저항했던 사건의 전모를 상술하고 있다.[4] 하지만, 김학재의 논문도 노래가 유혈사태의 발단이 되었음을 언급할 뿐, 금지곡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금지곡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5]

본 연구는 주요 선행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포로들의 노래 중 특히 금지곡에 주목하면서 한국전쟁의 유엔측 포로수용소에서 달라진 노래의 역할, 즉 유엔군의 '포로 통제 수단'으로서의 금지곡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포로들에게 금지된 노래는 무엇이고 금지곡 규정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

2) 이경분a,「6.25전쟁기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음악—냉전이데올로기와 노래」,『軍史』1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29-36면. 포로들의 일상과 문화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성강현의『6.25전쟁시기 포로 수용소와 포로들의 일상생활』(선인, 2022)에도 포로들의 노래나 금지곡에 대한 언급은 없다.

3) 조성훈,『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280면. 조성훈이 인용한 문서는 제8137 헌병사령부의 1952년 8월 19일자「지시」이다.

4) 김학재,「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 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사건들을 중심으로」, 168-17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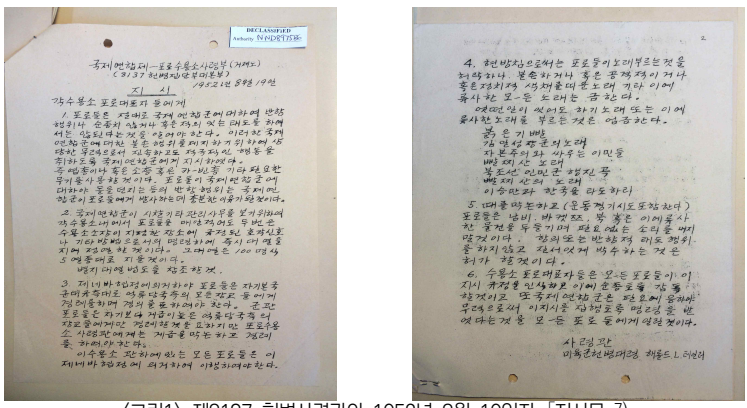
5) 금지곡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951년 8월 15일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8.15 노래제창 사건"에 대해서는 전갑생,『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011, 218-219면 참고.

했는지 살펴본 후, 금지곡목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애매한 금지곡이 발단이 되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봉암도' 사건의 '장교위원회 경과보고 검토문'(RG 338)[6]과 금지곡 대신 지정곡만 허락된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포로 항의문(RG 389) 등을 분석하여, 어떻게 금지곡이 '친공포로'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금지곡 규정으로 인한 유혈사태는 유엔군측의 포로정책이 분산 작전 이전 시기의 '무대응 원칙'과 포로분산 수용이후 친공포로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포로 관리 정책에서 혼선을 겪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금지곡

1) 수용소 당국이 금지한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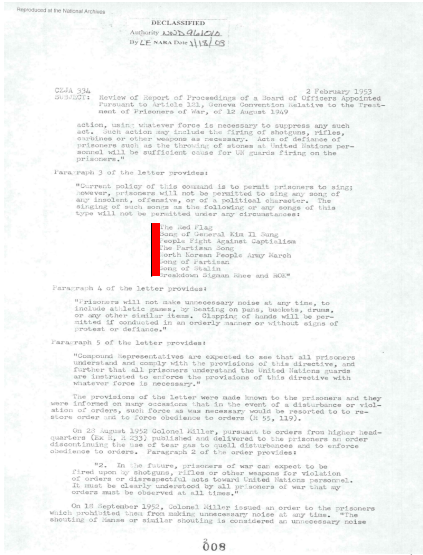
포로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노래를 금지하고 금지곡목을 발표한 것은 '송환포로'와 '비송환 포로'의 분산 수용 이후인데, 1952년 8월 19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제8137 헌병사령부에서 발표한 「지시문」에 총 7곡의 금지곡 제목이 나열되어 있다.



〈그림1〉 제8137 헌병사령관의 1952년 8월 19일자 「지시문」[7]

6) 원제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는 이하 본문에서는 「경과보고 검토문」으로 약칭한다.

7) RG 554, Entry (A1) 224, POW Incident Investigation Records 1950-1953, Box 1-30,



DECLASSIFIED

2 February 1953

Review of Report of Proceedings of a Board of Officers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121,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f 12 August 1949

action, until whatever force is necessary to suppress any such act. Such action may include the firing of shotguns, rifles, carbines or other weapons as necessary. Acts of defiance of prisoners such as the throwing of stones at United Nations personnel will be sufficient cause for US guards firing on the prisoners."

Paragraph 3 of the letter provides:

"Current policy of this command is to permit prisoners to sing; however, prisoners will not be permitted to sing any song of any insolent, offensive, or of a political character. The singing of such songs as the following or any songs of this type will not be permitted under any circumstances:

The Red Flag
Song of General Kim Il Sung
People Fight Against Capitalism
The Partisan Song
North Korean People Army March
Song of Partisan
Song of Stalin
Breakdown Sigman Rhee and ROK"

Paragraph 4 of the letter provides:

"Prisoners will not make unnecessary noise at any time, to include athletic games, by beating on pans, buckets, drums, or any other similar items. Clapping of hands will be permitted if conducted in an orderly manner or without signs of protest or defiance."

Paragraph 5 of the letter provides:

"Compound Representatives are expected to see that all prisoners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and further that all prisoners understand the United Nations guards are instructed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with whatever force is necessary."

The provisions of the letter were made known to the prisoners and they were informed on many occasions that in the event of a disturbance or violation of orders, such force as was necessary would be resorted to to restore order and to force obedience to orders (R 55, 119).

On 23 August 1952 Colonel Killer, pursuant to orders from higher headquarters (Ex 8, R 233) published and delivered to the prisoners an order discontinuing the use of tear gas to quell disturbances and to enforce obedience to orders. Paragraph 2 of the order provides:

"2. In the future, prisoners of war can expect to be fired upon by shotguns, rifles or other weapons for violation of orders or disrespectful acts toward United Nations personnel. It must be clearly understood by all prisoners of war that my orders must be observed at all times."

On 18 September 1952, Colonel Killer issued an order to the prisoners which prohibited them from making unnecessary noise at any time. "The shouting of names or similar shouting is considered an unnecessary noise

008

〈그림2〉 1952년 9월 8일의 지시가 인용된 문서[8]

〈표1〉 유엔군 사령관이 금지한 노래 총8곡

금지곡의 영어 제목 (그림2)	한글 제목 (*은 그림1에서 제외되었음)
1) The Red Flag	1) 붉은 기발(적기가)
2) Song of General Kim Il Sung	2) 김일성장군의 노래
3) People Fight against Capitalism	3) 자본주의와 싸우는 인민들
4) The Partisan Song	4) 빨찌산 노래
5) North Korean People Army March	5) 조선 인민군행진곡
6) Song of Partisan	6) 빨찌산의 노래
7) Song of Stalin	**7) 스탈린의 노래***
8) Breakdown of Sygman Rhee and ROK	8) 이승만과 한국을 타도하라

〈그림1〉은 포로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므로 금지곡목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림2〉는 미군의 「경과보고 검토문」이므로 영어로 되어 있다. 〈그림1〉과 비교했을 때, 〈그림2〉에서 늘어난 1곡은 〈스탈린의 노래〉이다. 이후

"POW Division PMS File," No. 200, 자료의 도움을 준 이선우 씨에게 감사드린다.

8) 1952년 9월 8일의 금지곡 목록 총 8곡을 언급하는 문서는 1952년 12월 14일 발생한 봉암도 유혈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검토문」이다.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 p. 8.

〈스탈린의 노래〉를 포함한 8곡 리스트는 거제도 저구리, 용초도, 봉암도 수용소의 금지곡목에도 똑같이 나타난다.[9] 용초도 수용소, 봉암도 수용소 및 저구리 수용소의 소장들은 왜 이전에 없던 금지곡 규정을 시행하였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 금지곡 제정의 배경

이전에도 포로들이 노래를 부르며 수용소 당국에 요구사항을 시위하고 당국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은 부산 포로수용소 시절이나 분리 작전이전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도 있었다. 예를 들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1951년 6월 19일 72수용동에서 점검을 거부하는 인민군 장교 포로들이 노래를 부르고 미군경비대와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 부산 포로수용소에서도 1951년 광복절 '8.15 노래'가 빌미가 되어 총 9명이 사망하고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10] 취침시간인 밤 21시이후 제10구역 공산측 포로들의 노래가 수용동으로 퍼져나갔을 때, 이를 중단시키려고 군부대가 수용동에 진입하여 발포하였던 것이다. 이 때 노래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병력이 동원되었지만 공식적으로 금지곡목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용소측은 왜 1952년 8월 하순에 금지곡을 발표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군측 포로수용소 당국의 태도 변화의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수용소 당국이 포로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은 1952년 5월 발생한 유명한 프랜시스 도드수용소 소장의 '납치사건'이었다. 수용소 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된 "인류전쟁사 중

9) 금지곡에 관한 규정은 각 포로수용소 소장의 권한에 속했다. 1953년 3월 30일자「포로노래에 관한 건」에서 용초도 수용소의 사령관 후레트 C 렐러 헌병중령은 "노래 허가 여부는 1952년 10월 9일자 8137헌병 사령부발(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 해롤드 L. 테일러) 지시서 148호에 따라 "각 수용소 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POW Division PMS File", No. 257. 테일러는 1952년 7월 14일부터 1953년 4월 27일까지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이었다.

10) 같은 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도 병력이 동원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RG 554, Entry A1 108, Box 1, Reports Broadcast 8/18/1951 - 10/5/1951, "Weekly Reports Radio", 1951년 8월 15일 일지(페이지수 없음).

특이한 사건"은[11] 수용소 당국이 포로 통제와 관리에 실패했음을 전세계에 알리는 사건으로서 유엔군의 체면이 땅에 곤두박질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포로들이 매일 아침 인공기를 게양하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거나 나무총을 만들어 군사훈련을 하여도 수용소 당국은 포로들의 탈출이나 폭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곽에서 경비에 집중할 뿐, 관여하지 않았다.[12] 포로송환 시 북한이나 남한을 선택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간 인민군장교 포로 주영복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용소측은 "빨간 개가 다른 개를 무는'(A red dog bit the other one)정도로 여기며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13] 각 수용동에는 '공산포로'와 '반공포로'가 섞여 있었고, 포로들의 이념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수용소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친공' 포로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수용동에는 수용소당국의 명령이 전달되기 힘들었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인민군장교들이 수용된 거제도 66수용동에서는 미군이 설치한 라디오와 엠프 등의 기기를 부수어 수용소당국의 라디오방송을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14] 즉, 포로의 분산작전 이전 '친공・반공'포로들이 섞여 있었을 시기에는 수용소당국의 '미간섭 원칙' 뿐 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금지곡 규정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 통역 인력이나 경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포로들이 금지곡을 불렀는지의 여부 뿐만이 아니라, 누가 불렀는지를 5천여명 단위로 다양한 구성원이 섞여 있는 수용동의 큰 규모를 감안할 때 실현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도드 장군 납치사건으로 무능하다는 조롱을 받았던 유엔군지도부는 분산작전이후인 1952년 8월, 포로들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11) 張澤石저, 손준식역,『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2009, 241면.
12)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85회 한국전쟁과 포로 2부 철조망 속의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uK3bnKMxM5w (검색일 2022.9.5.)
13) 주영복,『내가 겪은 한국전쟁』2권, 고려원 1991, 233면.
14) 이경분b,「포로를 향한 음악—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기 라디오방송음악과 프로파간다」,『동북아역사논총』76, 동북아역사재단, 2022, 262면 참고.

적극적인 무력진압의 태도로 돌변했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는 신설된 지 1달쯤 된 한국병참관구(KCOMZ) 사령관 헤렌(Thomas Herren)에게 1952년 8월 16일, 포로들에게 "도전받지 않는 통제"(uncontested control)를 주문했다.[15] "자유세계의 시선 앞에 우리의 입장에 손해를 입히거나 당혹스럽게 하는 포로수용소의 소요를 초래할 조건들을 용인하지 않으리라"[16]는 것이다.

이런 지령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강경 진압에 대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8월 1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보트너(Boatner) 소장은 지금까지의 유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즉각적인 무력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17] 이틀 후인 1952년 8월 19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헌병사령관은 '투석'과 '정치적 노래의 가창'이 "발사의 충분한 이유"가 됨을 명시하면서 금지곡 목록을 발표했다.[18] 다음 날 8월 20일에는 KCOMZ사령관과 포로수용소 사령관 회의에서 발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살하기 위해 발포하라"고 지시하였다.[19] 또한 8월 21일 제주도 포로수용소에도 '투석하는 포로는 사살될 것'이라는 특별명령도 하달되었다.[20] 이러한 일련의 강경 진압의 주문에는 포로들을 더 이상 제네바협약에서 전제로 하는 '비전투원' 포로로 여기지 않고, '활동적인 적(An active enemy)'으로 간주한다는 큰 원칙적 변화가 있었다.[21]

이런 맥락에서 금지곡은 포로들을 완전하게 장악하겠다는 유엔군의 변화된 강경진압 정책의 하나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5) RG 338, Eighth U.S. Army, Military History Section, Entry A1 224, Box 1650, Enemy Prisoner of War Records, 1951-53, Final Report to Control Prisoners of War, HQ KCOMZ.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p. 42. 포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 조직의 첫 사령관 헤렌은 1952.7.10.~1953.7.3.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Key Personnel", Ibid., Endpaper 1.

16)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p. 43.

17) 보트너의 말 인용은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 p. 33.

18) "POW Division PMS File", No. 200.

19)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p. 44.

20) 김학재, 앞의 글, 167면.

21) 조성훈, 앞의 책, 276면.

3) 금지곡목의 내용과 특징

금지곡 8개의 목록을 보면, 금지곡 규정은 '친공'포로에게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북한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한에 머물고자 하는 '반공포로'는 투쟁을 부추기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적기가〉, 〈인민군행진곡〉 또는 〈빨찌산의 노래〉, 〈스탈린의 노래〉와 같은 노래를 부를 리 없었다. 따라서 '반공포로'들에게는 이런 금지곡을 제정할 필요도 없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을 기록한 이한의 『1952년 거제도 일기. 석방된 포로의 혈의 기록』 나 오세희의 회고록 『65 포로수용소』에는 포로의 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둘 다 금지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22] 남한에 남아서 회고록을 출판한 포로들은 모두 '반공포로', 또는 '미송환 포로'이므로 금지곡 규정을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짐작된다.[23]

먼저 앞의 〈표1〉의 한글과 영어 금지곡명에 작사자 및 작곡자의 이름이 없고, 빨찌산의 노래는 두 곡이나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띈다. 원제목으로 되어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는 〈붉은 기빨〉과 〈김일성장군의 노래〉이다. 특히 〈김일성장군의 노래〉[24]는 월북시인 리찬 작시, 모스크바 유학파이자 북한 〈애국가〉의 작곡가 김원균작곡으로 인민군 포로들이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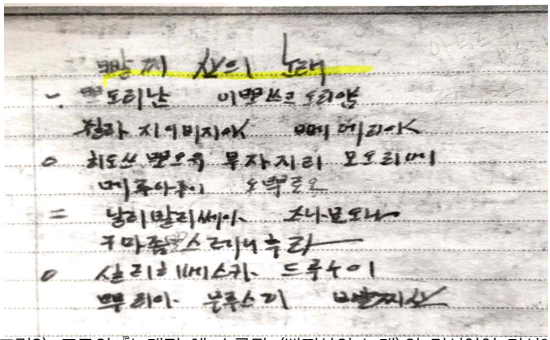
그외 '친공포로들'이 가장 애창했던 노래 중 하나는 "태백산맥에 눈내린다"로 시작하는 〈빨찌산의 노래〉이다. 당시 거제도의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배종엽의 증언에 따르면, '친공'포로들이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빨찌산의 노래〉를 인공기 게양식과 하강식에서 불렀고, '반공'포로 쪽에서는 이에 질세라 태극기로 게양식과 하강식을 하면서 "동해물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양진영은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25]

---

22) 이한, 『1952년 거제도 일기. 석방된 포로의 혈의 기록』, 부산:국제신보사 출판부, 1952; 오세희, 『65 포로수용소』, 대구:만인사, 2000.

23) 미송환 반공포로들은 섬으로 이동된 송환 친공 포로들과 달리, 육지로 분산 수용되었고 민간정보교육국(CIE)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으며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다.

24) 가사: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오늘도 자유 조선 꽃다발우에/력력히 비쳐 주는 거룩한 자욱/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그림3〉 포로의 『노래집』에 수록된 〈빨찌산의 노래〉의 러시아어 가사[26]

흥미로운 것은 금지 목록에 두 개의 빨찌산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나는 〈The Partisan Song〉, 다른 하나는 〈Song of Partisan〉으로 표기되었다.

전자 〈The Partisan Song〉은 유명한 아무르의 〈파르티잔의 노래〉라고 짐작된다. "뽀도리남"으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포로들이 러시아 원어로도 불렀을 정도로 애창된 흔적이 1950년 포획된 한 인민군 포로의 수기 『노래집』에서 두 번이나 발견된다.[27]

반면, 〈Song of Partisan〉은 "태백산맥에 눈내린다"로 시작하는 김순석작시, 박한규 작곡의 〈빨찌산의 노래〉로 보이는데,[28] 가사는 다음과 같다.

> 태백산맥에 눈내린다. 총을 메여라 출진이다
> 눈보라는 밀림에 우나. 마음속에 피끓는다
> 높은 산을 넘고 넘어 눈에 묻혀 사라진 길을 열고
> 빨찌산이 령을 내린다 원쑤를 찾아 령을 내린다

배상협의 증언처럼 〈빨찌산의 노래〉는 전투적인 가사와 진취적인 선률로 포로들이 시위에서 자주 애창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29] 금지곡목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붉은 기빨The Red Flag〉도 〈김일성

25)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85회 한국전쟁과 포로 2부 철조망 속의 전쟁", 앞의 링크.
26) 출처: 『노래집』(개인수기장),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국립중앙도서관 Item #158), 면수 없음.
27) 〈아무르 파르티잔의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ntN5iPT03IY (검색일 2022. 8. 31.)
28) 〈빨찌산의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SMLqfp0eN98
29) 임화작사, 김순남 작곡의 〈빨찌산 행진곡〉도 1950년에 발간된 『인민군 군가집』 1권에 수록되어 있지만, "태백산맥에 눈내린다"가 가장 자주 불린 빨찌산 노래인 듯하다.

장군의 노래〉, 〈인민군행진곡〉 및 〈빨찌산의 노래〉와 함께 포로들의 회고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래로서 인민군 포로들의 인기 레퍼토리 중 하나였다.[30] 〈붉은 기빨〉(〈적기가〉)은 원래 '못갖춘마디로 된 3/4박자'의 독일민요 〈소나무야 O Tannenbaum〉 선율을 차용하였지만, 북한식 노래로 바뀌면서 '갖춘마디의 4/4박자 행진곡'의 전투적인 노래가 되었다.[31]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특히 이 노래가 영화 〈실미도〉에서 불려진 이후, 후렴구인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여러 가지로 패러디되었다.[32]

1952년 8월의 첫 금지곡 제정에서 빠졌던 〈스탈린의 노래〉는 『조쏘 가곡 100곡집』의 첫 곡으로 실려있는 홍철민 작사, 이면상 작곡의 〈스탈린 대원수의 노래〉가 아닐까 한다.[33] 흥미롭게도 금지곡 레퍼토리에 김일성과 스탈린을 찬양하는 노래는 들어있는 반면, 북한군을 지원하였던 마오저뚱을 찬양하는 노래는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민군의 노래 레퍼토리에 마오저뚱이나 중국노래의 비중이 미미했던 것과 일맥상통해 보인다.[34]

---

30) 중공군 포로 장택석은 인민군이 판문점으로 가는 차량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노래〉 등 인민군군가를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장택석, 앞의 책, 32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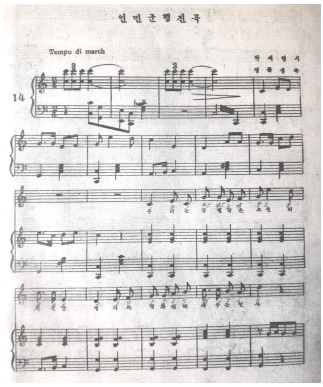
31)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는 2003년 개봉하여 한국영화역사 상 처음으로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백동호의 소설 〈실미도〉를 영화화하면서 소설에는 없는 〈적기가〉 제창을 넣었다고 하여 강우석감독은 용공으로 몰려 법정에까지 불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32) "〈실미도〉 '적기가'의 유래와 역사를 찾아서", 〈미디어 오늘〉, 2004.3.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26183(검색일 2022.12.18.)

33) 北朝鮮音樂同盟 編, 『조쏘 가곡 100곡집』, 平壤:북조선음악동맹, 1949, 1-2면.

34) 북한군대의 레퍼토리에 중국 관련 노래가 드문 것은 1951년 6월과 11월 평양의 총정치국에서 전쟁

지면상, 3번째 반자본주의 노래, 7번째 스탈린노래 및 8번째 반이승만 노래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기 힘들지만, 봉암도 유혈사건의 발단이 된 5번째 노래 〈인민군행진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악보1〉 정율성의 인민군행진곡 첫부분[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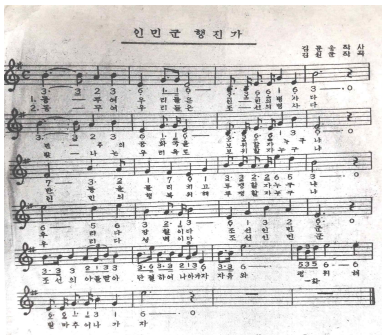
당시 '친공' 포로들이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 '인민군 행진곡'은 3곡 정도가 있다. 즉, 정율성의 〈인민군행진곡〉(1949), 김원균이 작곡한 〈인민군행진가〉(1950) 또 김옥성이 작곡한 〈인민군행진곡〉 (1950)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곡은 정율성의 곡이다.

3곡의 〈인민군행진곡〉 중 가장 먼저 출판 보급된 것은 정율선의 곡인데, 1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강철같은 조선의 인민군 / 평화와 정의 위에 싸우는 전사
> 불의의 원쑤들을 다 물리치고 / 조국의 완전독립 쟁취하리라
> 인민의 자유행복 생명을 삼고 / 규율과 훈련으로 다진 몸이니
> 승리의 민주대열 조선의 인민군 / 나가자 용감하게 싸워 이기자.

C장조의 간결하고 명랑하지만 진취적인 선율로 전쟁 전부터 인민군의 애창곡이 되었을 이 노래는 인민군의 전투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다.

반면, 1950년 1월에 만들어진 김원균의 〈인민군행진가〉는 e단조의 곡으로 선율이 어렵지 않고 경쾌한 리듬으로 흥겹게 부를 수 있고, "자유와 평



〈악보2〉 김원균이 작곡한 〈인민군행진가〉(1950)[36]

중 발간한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1권과 2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분a, 앞의 글, 34-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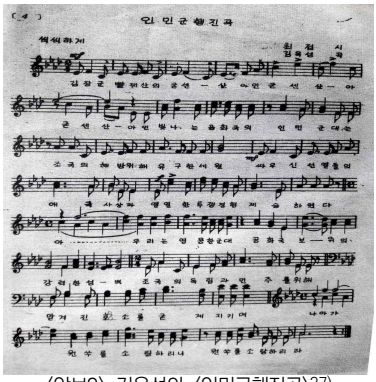
35) 출처: 北朝鮮音樂同盟 編, 『조쏘 가곡 100곡집』, 33면.

36) 출처: 문화선전성편, 『인민의 노래』 6권, 평양: 1950년. 1월, 면수 없음.

화"를 강조하며 훨씬 온화한 분위기의 노래이다.

동무여 우리들은 인민의 병사다
민주의 공화국을 보위할자 누구냐
반동을 물리치고 투쟁할 자 누구냐
우리다 강철이다 조선인민군
조선의 아들딸아 단결하여 나아가자
자유와 평화 위해 발마추어 나가자

김원균의 〈인민군행진가〉는 『인민의 노래』 6권의 세 번째 수록곡인데, 위의 악보에서 보듯이, 음표 아래에 숫자가 적혀있다. 이 '숫자보'는 악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악보3〉 김옥성의 〈인민군행진곡〉[37]

다른 한편, A♭장조로 된 김옥성의 〈인민군행진곡〉은 2부 또는 4부 합창을 위한 노래이다. 중간에 박자도 바뀌고, 음역이 2옥타브 이상(최고 고음 g'')으로 일반병사를 위한 행진곡으로서는 음악적 요구가 꽤 높다. 대중적인 보급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인민군협주단과 같은 숙련된 음악단체를 위한 노래로 보인다.

김장군 빨찌산의 굳센산아인 굳센산아
빛나는 공화국의 인민군대는 조국의 해방 위해 유구한 세월
싸우신 선열들의 애국사상과 열열한 투쟁경험 계승하였다
아~ 우리는 영용한 군대 공화국 보위의 강력한 성벽
조국의 독립과 민주를 위해 맡겨진 호소를 굳게 지키며
나아가 원쑤를 소탕하리니 원쑤를 소탕하리라

37) 출처: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인민군 군가집』 1, 연도없음, 4면.

정율성과 김원균의 노래가 전쟁 전에 발표되었다면, 김옥성의 〈인민군행진곡〉은 인민군이 전쟁체제로 편재된 후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에서 발간한 〈인민군 군가집〉 1집의 첫 곡이다. 그런 만큼 가사도 앞의 두 곡보다 "원쑤를 소탕하리라"는 전투적인 내용이다. 금지곡 목록의 〈인민군행진곡〉은 정확하게 어떤 곡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의 것이든 모두 북한군대의 노래이고 전투적, 호전적 내용이므로 금지곡에 속했다.

이 8곡의 금지곡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8곡 이외의 정치적인 노래의 금지규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군병사는 물론 국군병사도 잘 모르는 북한 노래일 경우 오해나 착각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실제 포로들의 증언이나 항의문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유혈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일이 곡목에 대한 오해와 의사소통문제 및 '의도된 착각'에서 시작될 수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봉암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3. 금지곡으로 촉발된 봉암도의 유혈사건 (1952. 12. 14.)

1952년 6월 분산 및 격리 작전이 완료되고, 인민군 '송환'포로들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본부(UN POW Camp 1)와 저구리(1A 거제도 남단), 용초도(1B)와 봉암도(1C)에 소규모로 나뉘어 따로 수용되었다. 봉암도에는 민간인 '송환포로' 약 9천명이 2구역으로 나뉘어 수용되는데, 각 수용동은 600명 단위의 소규모로 분리되었다. 이들 중에는 수용소측의 분리 심사에 격렬하게 저항하다 70여명이 사망한 '1952년 2월 18일 사건'의 '강성 공산주의자' 외에도 유명 월북화가 이쾌대(1913-1965)[38] 및 관동군 출신의 일본포로까지 '송환'을 선택한 다양한 민간인 억류자들이 수용되었다.[39]

38) 이쾌대(포로번호 0038760)는 반공포로들이 제거할 좌익 리스트에 올라있어서 '친공'수용소로 이동하였고, 1953년 8월 29일 북송되었다. 최태만,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사이 이쾌대의 행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3, 186-187면.

39) 경남시 한산도 추봉도 포로수용소 유적지 안내문 참고.

1) 봉암도 사건의 발생과 경과

이미 김학재의 연구에서 알려진 대로 포로들의 노래 소리에서 시작한 이 유혈 사건은 1952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제2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건 발생에 대한 「경과보고 검토문」의 "Fact" 부분에는 용초도 수용소 소장 밀러(George P. Miller)가 금지곡에 대한 명령을 1952년 9월 8일 분명하게 '지시'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된 밀러의 1952년 9월 8일자 지시문(그림2)에는 "현재 사령부의 방침은 포로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만 무례하거나 모욕적이거나 정치적인 성격을 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40] 또한 "포로들은 운동 경기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한 소음을 내선 안된다"는 소음 금지 규정과 함께, 불필요한 소음이란 "만세의 외침이나 이와 유사한 외침"이라는 밀러 소장의 추가 설명이 덧붙여있다.[41] 따라서 포로들은 운동 경기에서도 이겼다고 만세를 부를 수 없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하며, 박수도 "항의나 저항의 표시가 없을 때만" 허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UN군 경비병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물론 어떠한 "불복종, 반항적, 적대적 제스처"도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42]

봉암도사건 직후 1952년 12월 15일부터 19일, 12월 27일 그리고 1953년 1월 18일에 소집된 장교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1953년 2월 2일 「경과보고 검토문」이 작성되는데, 사건 개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건 발생 몇일 전부터 포로들 사이에 무언가 계획하는 듯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1952년 12월 14일 13시 직전에 제2구역의 F 수용동에서 거의 대부분의 포로들이 공산주의 노래 ("인민군 군가"와 "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라" 그리고 "미제국주의자의 개를 타도하라")를 큰 소리로 부르기

40) 원문은 "Current policy of this command is to permit prisoners to sing; however, prisoners will not be permitted to sing any song of any insolent, offensive, or of a political character. The singing of such songs as following or any songs of this type will not be permitted under any circumstances"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 p. 8).
41) Ibid., pp. 7-9.
42) Ibid., p. 7.

시작했다. 곧 F수용동의 노래에 B수용동 포로들을 비롯하여 A와 C수용동을 제외한 모든 수용동에서 공산주의 노래의 후렴구를 불렀다. 이에 밀러대령의 지시에 따라, 에드윈 코탐(Captn. Edwin Cottam)미 육군 대위가 지휘하는 50여명의 미군과 한국군이 F수용동에 진입하였고, 시위하는 포로들을 마주하고 서서 노래를 멈추라는 명령을 영어와 한국어로 여러 번 반복했으나, 포로들은 저항하며, 일부는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A와 C수용동을 제외한 모든 수용동의 3600여명 포로가 격앙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밀러소장과 유엔장교들은 "총체적 전투가 임박했고, 부대가 위험에 처했으며, 사령부가 위험에 처했다"고 믿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43] 일차 발포 후 몇 몇 포로가 신음했지만, "광신적인" 포로들은 더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발포 명령으로 더 많은 포로들이 부상당했는데, "마치 상처 입은 동물처럼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44]

무력사용으로 발생한 포로의 희생이 특히 큰 곳은 제2구역의 F수용동이었는데, 이에 대해 밀러소장은 "F수용동을 먼저 저지한 후, B수용동을 막지 않았다면", A수용동을 제외한 모든 수용동의 "정신나간" 포로들이 쏟아져 나왔으리라"고 주장했다.[45] F수용동이 진압되는 동안에 B수용동 포로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격하고 광적인 톤으로 노래했다. 밀러소장은 스키위스 (Lt. Skewis)와 마이어스 중위에게 B수용동 포로들을 향해 30구경 기관총을 쏘라고 명령했고, 이런 사격에도 포로들은 잠시 멈출 뿐 계속 노래했다. 그러자 스키위스 중위는 한국군 병사에게서 카빈을 빌려 포로지도자들 몇 명을 정조준하여 쏘았다. F수용동 포로들을 진압한 병력이 B수용동으로 와서 총검과 소총으로 포로들을 강제진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총 349명의 포로사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유엔군측의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많은 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유엔군 사령부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소요를 진압하고 "포로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uncontested) 통제권을 유지하고,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는" 무력만이 필요했다고 결론지어졌다.[46] 기관총을 발포하기 전에 최루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용소측은 봉암도 수용소가 "계단식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서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이 불리했고, 또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가스 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47]이었다고 주장한다.

43) Ibid., p. 10.
44) Ibid., p. 10. 이 문장은 코탐 대위의 표현이다.
45) Ibid., p. 11.
46) Ibid., p. 33.

이것으로 노래하는 포로들을 향해 '최루탄의 경고 없이' 바로 발포를 했던 행위가 정당화되었다.[48]

2) 금지곡 규정의 문제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포로측과 수용소 당국 측의 증언이 차이를 보인다. 각자의 입장 차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8곡 이외의 공산주의 노래에 대한 금지규정은 인민군 노래 레퍼토리에 대한 무지와 영어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포로들이 부른 노래가 금지곡이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봉암도 수용소의 한국군 강현일(Kang Hyung Il) 중위의 증언[49]에서 알 수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2시에서 13시 사이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이 때 포로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때 미국인 고문관이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았지만, 그에게는 그 노래가 "꽤 낯설었다(quite strange)"고 한다.[50] 그래서 강중위는 하사 중 한 명에게 "저 노래 제목을 아느냐?"고 물었고, 부하 하사관이 "〈인민군 행진곡〉이라 해서 나는 내 부하가 알려준 대로 미국 고문관에게 통역"해 주었다고 진술한다.[51]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군은 멜로디가 잘 알려진 경우를 제외하고 포로의 노래가 금지곡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국군의 판단과 번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강중위의 증언처럼 실제로 봉암도 포로수용소의 미군 알프레드 스코실라스(Alfred Skoczylas)상병은 포로들의 노래가 "'공산주의 노래 또는 유엔에 반대하는 노래'(a communist song or against the UN)"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국군 카추샤 KATUSA(Korean Augmentation

47) 「한국전쟁 중 동양인 공산주의포로의 관리와 경비에 관한 연구」, 『거제근현대문헌총서』 6, 296면.
48)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 p. 10.
49) 강현일중위는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경우로서 정식 직책은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Liaison Officer(한국군 군사 고문단 연락관)이고, 코탐 대위의 통역관이었다. Ibid., p. 187.
50) Ibid., p. 187.
51) Ibid., p. 187.

to US Army) 대원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증언한다.[52] 이 과정에는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여부의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8곡의 금지곡 외 포괄적인 개념의 '공산주의 노래'는 해석의 차이나 오해 또는 착오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실제로 봉암도 유혈사건의 「경과보고 검토문」에 수록된 증인심문 내용을 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봉암도 사건 당일 점심 시간에 포로들의 노래소리를 들었던 강현일중위가 자신에게 '낯설었던' 노래의 제목을 〈인민군행진곡〉이라고 미군에게 전달했는데, 그 근거는 한 명의 부하 하사관의 판단이었다. 이 판단은 어떠한 검증도 없이 바로 미군에게 전달했고, 여기서도 아무런 검증과정이 없이 밀러 소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바로 소대 병사들을 파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인민군 포로들이 수도 없이 불렀을 〈인민군행진곡〉이 '꽤 낯설었다'는 강현일중위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강현일중위에게 낯설었던 노래였던 만큼 인민군 포로들이 자주 불렀던 정율성의 곡(악보1 참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F수용동의 카추샤 신홍국(Chin Hong Gook) 상병의 증언에 따르면, F수용동에서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은 "미제를 파멸하고 미제의 개를 파멸하라"였으며, C수용동을 제외하고 제2구역의 모든 수용동에서 노래했다고 한다.[53] 하지만, 앞의 〈인민군행진곡〉 3곡 모두에는 '미제와 미제의 개를 타도하라'는 가사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악보1~3 참조) 신홍국이 12시쯤에 들었다는 노래는 강현일 중위가 들었던 노래와 다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강중위가 들었던 노래가 〈인민군행진곡〉이 아니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경과보고 검토문」의 Fact에는 (정확한 노래제목이 아닌) '인민군 군가'와 '미제를 타도하라', '미제의 개를 타도하라'는 공산주의 노래였다는 신홍국의 증언이 반영되어 있다.[54]

어쨌든 덜 알려진 곡일 경우, 한편으로 국군 하사관이 북한군의 노래를 잘

52) 상병 알프레드 스코질라스 증인심문, Ibid., pp. 187, 198-199.
53) Ibid., p. 201.
54) 카추샤 홍교식(Hong Kyo Sik)도 자신은 "공산주의 노래"를 들었고, 노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출동한 한국 육군 보병중대가 노래 중단의 경고를 여러 차례 했으나 오히려 포로들의 노래는 제2구역의 다른 수용동으로 번져갔다고 증언한다. 앞의 글, pp. 203-204.

못 이해할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 북한군을 미워하는 국군 카추샤의 '의도적 착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산수용 이후 '공산포로들'이 수용된 곳에서 카추샤의 횡포에 대한 포로들의 항의와 불만은 흔했다.[55]

무엇보다도 봉암도 포로들의 증언은 국군의 증언과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장교위원회의 증인으로 불려간 B수용동의 포로 육명식(Yook Myong Sik 37269번)에 따르면, 포로들은 8개의 금지곡은 부르지 않았고, "공인된 노래만" 불렀다고 증언했다.[56]

>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작업반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전에 포로 대표를 통해 **금지된 8곡을 제외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모여서 유흥회를 갖자고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8곡을 제외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57]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로들이 사건 발생 이전에 포로대표를 통해 8곡의 금지곡 이외의 가창 허락을 받았다는 점이다. 육명식은 B수용동 포로들이 부른 노래는 첫째, 애국적인 노래, 둘째, 노동자의 노래, 셋째, 축하행사의 건배 노래 등 비(非)금지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58]

또한 제2구역 E수용동 포로대표였던 포로 문천순(Moon Chun Soon 30832번)은 영어를 잘하여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증언했는데, 그의 진술은 육명식보다 자세하다. 그에 따르면, 포로대표들은 사건 전날 12월 13일, 구역 사령관인 헨리 파머 중위와 미팅을 갖고 인민군 생활에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억류당국이나 UN을 모욕하지 않는 노래", 즉, 예를 들면 "조종사의 노래"(Aviator Song)와 같은 노래의 가창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59]

---

55) 카추샤의 횡포에 대한 항의는 저구리 B수용소 「항의문」(1953년 4월 2일), 윤경호, 「국제연합 용초도 포로수용소 소장에게 보낸 편지 항의서신」(1953년 4월 6일) 참고. 카추샤에는 기독교의용대의 청년들이 많이 들어갔다. 김병섭 외, 「6·25전쟁 초기 기독교의용대의 창설과정(上)」, 『신학과 현장』 26, 목원대 신학연구소, 2016, 215-240면; 『기독교사상』, 762, 2022년 6월호에서 재인용.
56)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 p. 211.
57) 강조는 필자의 것임. Ibid., p. 211.
58) Ibid., p. 211.
59) Ibid., p. 214. 문천순은 이전에 기독교인이었고, 1952년 6월 13일부터 줄곧 E동의 포로대표였다.

하지만, 유엔군의 「경과보고 검토문」에는 12월 13일 구역 사령관 파머중위가 소집한 포로대표단 회의 내용에 대해서 문천순과 전혀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 즉, 파머중위는 포로대표들과 합의한 비공산주의 노래의 가창 허락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반면, 공산주의 노래를 금지하고, 명령에 불복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강조했다고만 증언한다.[60] 인민군 군가이지만, 〈조종사의 노래〉처럼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파머에게 사전에 문의하고 허락을 받았다는 포로 문천순의 증언과는 다른 것이다. 강현일중위에게 '꽤 낯설었던' 포로의 노래는 〈인민군행진곡〉이 아니라, 〈조종사의 노래〉나, 애국적인 노래, 노동가요, 건배의 노래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인민군 군가였을 가능성도 있다.

「경과보고 검토문」에도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를 금지곡인 〈인민군행진곡〉이라는 정확한 곡목을 제시하지 않고, '인민군 군가Peoples Army song'[61]라고 통칭한 것은 이러한 의문에 무게를 실어준다. 또한 문천순도 포로들이 처음에 불렀던 5-6곡을 기억하고 있는데, 금지된 노래가 아니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적어도 '발사 전'에는 금지된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나, 오히려 '발사 후'에 금지곡을 불렀다고 강조한다.[62] 따라서 카추샤 신흥국이 들었다는 '미제와 미제의 개를 타도하라'는 내용의 노래는 포로들이 부르기는 했으나, 발사 전이 아니라, '발사 후'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종사의 노래〉와 같은 비전투적 인민군 군가를 파머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큰소리로 노래했던 포로측과 인민군 군가는 모두 금지곡이라고 여기는 한국군 카추샤, 그리고 금지곡인지 아닌지를 카추샤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유엔군측, 이 3자간의 소통의 문제와 이해의 차이가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장교위원회는 파머중위와 비전투적 인민군군가의 가창을 협의했다는 포로대표의 증언이나, "14일 당국은 사전에 포로들에게 노래를 중지하라는 어떠한 주의도 주지 않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63]는 포로의 증언보다 발사

60) Ibid., p. 9.
61) Ibid., p. 9.
62) Ibid., p. 215.
63) 포로대표 육명식의 증언과 문천순의 증언, 앞의 글, p. 211과 218.

전에 3번 노래 중지를 명령했고, "히스테리하고 광적인" 방식으로 시위하는 포로 3,600명 이상의 "탈출이 임박해 보였다"는 카추샤와 유엔군 병사 및 밀러 소장의 증언에 따라 유엔군측의 발포는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64]

불필요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유엔군측은 조중연합군 대표 남일과 소련측의 비난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의 비난에도 직면했다.[65] 이 사건이후 유엔군측은 다시 진압방식의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포로를 진압할 때 '비독성 화학제'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즉, 유엔군사령부는 바로 사건 다음 날인 1952년 12월 15일 수용소의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치명적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비독성 자극제"를 사용하여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66] 1952년 8월 중순 "최루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통제가 약하다는 증거"[67]라며 강력한 통제를 주문했던 것에서 4개월 만에 다시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수용소 소장의 권한이었던 금지곡과 소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68]

이후 1953년 3월 24일, 이번에는 봉암도 수용소 제1구역에서 포로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포로지도자를 추방한 것에 대해 수용소측에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수용소측은 CN M-25 최루탄으로 포로들을 분산시켰고, 90%의 포로들이 눈, 코의 염증, 기침, 메스꺼움, 구역질 등의 증세를 겪었으나 사망자 없이 진압되었다고 보고한다.[69] 그러나 피해를 입은 포로들은 맹인이 되거나 폐병, 피부병, 호흡기병 등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대한 포로들의 불만은 계속되었다.[70]

---

64) 스키위스중위 등 사건에 연루된 미군의 행동이 범죄행위인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관의 명령에 따라 선의로 행한 것은 정당화된다고 부언하고 있다. Ibid., p. 33.

65) 조성훈, 앞의 책, 303면;「미제의 봉암도 포로학살 사건으로 영국의회 대혼란」, 『민주조선』 1952. 12. 26; 1953년 1월 30일에 작성된 「미 국무부 존슨, 한국에 대한 영국의 백서 내용을 보고 의견 피력」, 『거제근현대문헌 총서』 6, 421-422면.

66) 『거제근현대문헌 총서』 6, 296면.

67)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p. 42.

68) 거제도 남면 저구리 3구역 E수용동에서도 1953년 2월 9일 포로들이 "금지된 전투적인 공산주의 노래"를 불러서 경비병력과 무력충돌이 있었지만, "충격 수류탄"과 "비독성 자극제"의 투입으로 큰 희생 없이 진압되었다. 전갑생 엮음・해제, 『거제근현대문헌총서』 6, 298면.

69) 『거제근현대문헌 총서』 6, 301면.

4. 용초도 사건: 허용된 5곡과 포로들의 항의

봉암도 유혈사건의 교훈은 다른 수용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후 노래로 인한 유혈사태는 용초도에서도 발생했다. 용초도에는 강성 '친공포로' 약 8천명이 3구역으로 나뉘어 수용되었고, 각 구역은 4개 수용동으로 구성되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악명이 높았던 66동(인민군 장교수용동)의 포로들이 대거 모인 용초도에서도 1953년 3월 7일, 제1구역 4개 수용동의 포로들이 금지곡을 부르며 시위를 하는 사건으로 23명의 포로가 죽고, 60명이 부상 당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71]

용초도 수용소 당국도 8곡의 금지곡 및 정치적 노래를 부를 시에는 '가창 자체를 금지'할 것이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953년 3월 30일 용초도에서는 앞의 금지곡 규정과 다른 새 규정이 등장한다. 이전의 1953년 2월 4일자 용초도 사령관발 지시 "포로노래에 관한 건"을 취소하고 '5곡'만을 허용한다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졌다. 이는 금지곡 8곡을 비롯한 정치적인 노래는 물론이고, 5곡 이외 어떤 곡도 부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2〉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허락된 노래 총5곡 (1953. 3. 30.)[72]

도라지타령, 양산도, 천안삼거리, 아리랑타령, 노들강변

이 허락된 노래 5곡의 중요한 음악적 공통점은 모두 3박자 계열의 (신)민요이다. 당시 포로 대다수가 선호하는 음악은 (신)민요, 판소리 등 전통음악이었므로[73] 위의 (신)민요는 포로들의 대표적 애창곡에 속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수용소측의 입장에서는 포로들이 부르는 노래가 정치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를 없애고, 애매함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74] 더욱이

70) 리우용, 「항의문」(1953. 4.4.), RG 389, Enemy Prisoner of War/ Civilian Internee Complaint and Investigation File, 1951-53, Box 13, p. 227; 리봉남의 항의문, Ibid., p. 202;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1953.4.23.), Ibid., p. 190.

71) 조성훈, 앞의 책, 303-305면; 『로동신문』, 1953.3.12.

72) "POW Division PMS File", No. 257.

73) M. Lee Osborne, *Life has Loveliness to Sell, A Sort of Autobiography* (Edward Freimuth Collection), 1981, Okinawa National Archive, Chapter 11, p. 21,

74) 거제도 남단의 저구리에서도 포로들의 노래제창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포로들에게 5곡목을

3박자의 흥겨운 노래는 수용소 경비병에게도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장점도 있었다. 유연한 리듬의 재즈를 부르며 행진하기 힘든 것처럼, 3박자 계열의 아리랑과 노들강변을 부르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며 투쟁하는 것은 포로들에게 낯설었을 것이다. 절도있는 일사불란한 행동과 투쟁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진곡이나 전투가가 주로 각이 선 2박자 또는 4박자 계열로 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3박자 계열의 음악은 (왈츠에서 보듯이) 인간의 몸을 춤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긴장하며 투쟁을 고무시키기보다 유흥과 오락의 분위기를 자극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요를 빠른 템포의 자진모리로 바꾸거나, 가사를 바꾸어서 투쟁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용소당국에 보낸 포로들의 항의문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금지곡의 애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5곡 허용 원칙은 저구리 수용소에서도 시도한 흔적이 있지만,[75] 이외의 다른 노래를 부를 시에는 가창 자체가 금지되었으므로, 이는 포로들이 제기하는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지는 못했다.

포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5곡만 허용된 것은 포로들의 수용소 일상 생활을 위한 노래 레퍼토리로서 매우 큰 한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용초도에서 새로운 5곡 허용 방침이 내려진 다음 날인 1953년 3월 31일, 노래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2구역 C컴파운드 포로대표 유동춘 대위의 항의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 3월 31일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우리 수용소 건물 안에서 포로들의 노래소리가 들렸다고 하여 (…) 집단적인 무장적 징벌을 가할려고 하였습니다 (…) 지루한 감금생활의 하로를 위안받기 위하여 **고향을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외부에 들렸다하여 그것도 이미 중지된지 오랜 시기에 와서 어마어마한 무력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였습니다.[76]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포로의 항의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리봉남, 「항의문」, Ibid., p. 202.

75) 리봉남, Ibid., p. 202.

76)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p. 190. 강조는 필자의 것임.

위의 진술로 보아 포로들이 5곡의 허락된 (신)민요가 아닌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전혀 정치적인 노래가 아니었으므로, 용초도 제2구역 C수용동 포로들은 1953년 3월 31일 왜 갑자기 무장병이 동원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하루 전인 3월 30일 새 방침으로 바뀌었으므로 포로들은 아직 새 방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인민군장교 유동춘은 제네바협정 2항의 「포로들의 인격의 존중」 항목을 인용하며 금지곡이나 몇 개의 노래만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욕망"를 무시하고 "불필요하며 지나친 간섭"이라 항의하면서 "노예적"으로 구속하는 미군의 관리정책의 부당함을 비난했다.[77]

>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찌 노래를 부리지 않으며 소리를 낼 수 없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조국에 있어서는 죄수에게도 강요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히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노래도 못부르게 하고 집단적 체육조차 금하는 부당한 명령지시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까스탄과 집단적 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관리하는 포로수용소에서 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78]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이념적 노래가 아닌 포로 생활의 애환을 달래는 노래에 대해서까지 징벌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북한의 '인간적인 감옥'과 미군의 '비인간적인 포로수용소'를 비교하며 노래와 소리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 협정에는 정치적인 노래를 제외하고, 포로들의 오락과 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1953년 4월 20일 작성된 유동춘의 다른 항의서한에는 포로들의 비정치적인 노래뿐만 아니라, 춤도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춤을 금지한 이유로서 '여자가 없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없다'는 수용소 당국의 설명은 포로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79]

---

77) 노래 등 문화오락에 대한 포로들의 항의문은 윤경호, 「용초도 포로수용소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1953년 4월 6일; 윤경호, 「항의문」, 1953년 5월 16일;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1953년 4월 20일;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1953년 4월 23일 등이 있다.

78)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p. 191.

79)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p. 192. 포로들은 항의문에서 "관리자에 대한 도전적이며 시위적인 노래를 제외한 민요, 무용 등 실내외의 오락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면서, "춤은 여자가 없으면 출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은 최초부터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구

인민군 장교인 유동춘의 항의서한은 포로들의 항의문 중에 보기 드물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이 오히려 수용소 사령관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 있음도 유감없이 드러낸다.

> 당신[사령관]은 3월 31일 실내에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났다하여 무장병을 동원시키고 당신들의 부당한 명령에도 즉시 응하고 노래소리를 중지하고 있는 우리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노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고 당신의 상관인 거제도 사령관에게 **허위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 상관에 대한 죄악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은 이상과 같이 3월 31일 사건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당신은 미국의 소소한 장교도 아닌 섬 사령관으로서 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당신이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당한 일이라고 거듭 생각하고 있습니다.[80]



〈그림4〉 유동춘대위가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1953. 4. 23.) 첫 페이지

수용소 소장이 근무시간에 만취한 것, 상부에 허위보고한 것 등을 지적한 이 항의서한에 용초도 수용소 사령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인민군 장교포로들은 당당하게 당국의 "비인도적 징벌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감금되어있는 조건 이외에는 당신 나라의 군대와 합일한 인도적 대우"를 요구하였다.[81] 이러한 요구는 금지곡 규정과 허용되는 노래 규정, 그리고 가창허용 시간 제한 및 전체 수용동의 동시 가창 금지 등에 대한 모든 세부규정이 사실상 무효함을 전제한 것이다.

실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비웃음"이라고 적고 있다.

80)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p. 192. 강조는 필자의 것임.

81)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p. 193.

5. 포로 통제수단으로서의 가창 제한

포로들이 노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수용소 당국의 금지곡 규정이나, 가창 금지는 포로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봉암도 수용소의 포로 육명식의 증언에서처럼 "인민군 생활에서, 그 즐거움은 매일 노래하는 것"이었고, 군가는 인민군의 군대생활에서 주요한 "일정 중 하나"였다.[82] 이는 곧 군가를 통해 병사들의 내무반 생활의 질서가 유지되어왔음을 의미하는데, 군가의 가창이 금지됨은 인민군 포로의 일상에 '윤활유'가 없어진 것과 같은 변화를 의미했다. 무엇보다도 '친공'포로들의 투쟁에서 노래는 (총성없는) 무기와 같은 위력을 발휘했으므로,[83] 가창을 제한하는 것은 투쟁수단이 없어진 것과 같을 정도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

'반공포로' 이한은 『1952년 거제도 일기. 석방된 포로의 혈의 기록』에서 분산수용 전의 거제도 포로수용소 시기, "쏘낙비 같이 쏟아져 나오는 붉은 군가와 우렁차게 부르짖는 스로간이 수용소를 휩쓸어버리는" 일을 자주 목격하고, 억압속에서도 노래를 통해 조직적 단결을 이루어내는 포로노래의 대단한 위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84] 이처럼 노래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표현해왔던 '친공'포로들에게는 "불손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정치적 색채를 띤 노래" 및 "이와 유사한 모든 노래"를 금하는 조치는 '전투력의 상실'과도 같은 것이다. 남한 의용군 출신 '미송환 포로' 오세희가 탄복했던 "어디를 가도" 시들 줄 몰랐던 "좌익포로 선전 술책"[85]은 노래가 제한되면서 더 이상 기를 펴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수만명의 포로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른다면, 그 심리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졌는데, 수용소당국이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수용동씩' 따로 노래할 것을 명령한 것도[86] 이러한 포로노래의

82) 육명식의 증언,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 , p. 210. 미송환 포로 오세희에 따르면, 인민군 포로들은 행진하면서 항상 〈김일성장군의 노래〉, 〈빨찌산의 노래〉, 〈붉은 깃발〉을 불렀다고 한다. 오세희, 앞의 책, 201면.
83) 이경분a, 앞의 글, 29-30면.
84) 이한, 앞의 책, 77면.
85) 오세희, 앞의 책, 279면.
86) 저구리 수용소(1953. 2.4)의 지시문, "POW Division PMS File", No. 207; 용초도 수용소

심리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엔군 당국이 '금지곡'을 발표하면서 가창을 제한하고자 한 것은 포로들의 '심리적 무기'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켜서 '완전한 포로 통제'를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봉암도 사건이나 용초도 사건에서 보듯이, 엄격한 가창 규정은 일상에서 노래를 중요하게 여기는 포로들의 반발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유혈사태를 초래했다.[87] 포로들을 통제하여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수용소를 만들고자 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수용소의 질서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6. 끝맺으며

지금까지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의 가창을 제한하는 수용소측의 금지곡목과 금지곡 규정의 배경 및 금지곡의 특징과 금지곡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952년 4월 '친공포로'와 '반공포로'의 분산수용 이전만 해도 포로들의 '가창과 구두 모욕'은 포로들을 향해 발포를 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88] 하지만, '친공포로'의 분산수용 이후인 1952년 8월부터는 금지된 정치적 노래의 가창은 합법적인 발포와 무력진압의 정당한 이유가 되었다. 투쟁과 저항의 수단으로서 노래가 '친공포로'에게 중요한 무기였던 만큼 수용소측은 가창(소음)제한으로 포로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애매한 금지곡 규정은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봉암도 유혈사태를 낳았다. 금지곡을 폐지하고, 오로지 (신)민요 5곡만을 허락하게 되는 용초도 수용소에서도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1953. 3. 30)의 지시문, Ibid., No. 257.

87) 포로들은 금지곡 규정이나 허락된 노래 규정 및 소음 규정 자체가 제네바협정 위반이며 포로들을 '학대하려는 구실'로 보았다. 윤경호, 「용초도 포로수용소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1953.4.6.), p. 178. 또한 포로들의 체육과 집단 동작을 "군사훈련"이라며 가스탄을 쏘는 것에 대해서 당국이 오히려 "수용소내 질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려"한다고 항의했다. 최성삼, 「항의문」, p. 186; 「포로 항의문」, p. 197; 유봉길, 「항의문」, p. 195.

88) 조성훈, 앞의 책, 279면.

특히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심각한 유혈사건에 대한 증인 심문의 핵심 질문이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가 금지곡이었는가'와 '발포 전에 노래를 중단하라는 충분한 경고가 있었는가'였다는 것은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로의 노래'로 인한 유혈 사건은 한국전쟁 중 유엔군측 포로수용소의 특수성이 아닐까 한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노래의 역할은 무장해제당한 포로들이 수용소 당국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했고,[89] 이에 비례하여 유엔군측의 노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포로의 노래가 그 이전의 전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높은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기의 포로수용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노래'를 둘러싼 수용소 당국과 포로 간의 갈등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89) 자세한 것은 이경분a, 앞의 글, 29-31면.

▮ 참고문헌

1. 일차 자료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국립중앙도서관 Item #158), 『노래집(개인수기장)』

RG 338, Korea Communication Zone, 1951-52, Entry NC 338-84, Box 509, Board Proceedings on Incident Occurring, 14 December 1952, "Review of Reports of Proceeding of a Board of Officers", pp. 1-280

RG 338, Eighth U.S. Army, Military History Section, Entry A1 224, Box 1650, Enemy Prisoner of War Records, 1951-53, Final Report to Control Prisoners of War, HQ KCOMZ.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pp. 1-160.

RG 389, Entry A1, Box 16. "Singing by POW (Chogu-ri)", 1953.2.4. 일자,

RG 389, Enemy Prisoner of War, Civilian Internee Complaint and Investigation File, 1951-53, Box 13:

리봉남, 「항의문」, p. 202.

유동춘.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1953년 4월 23일, pp. 190-193.

_____, 「용초도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1953년 4월 20일, 같은 자료, pp. 161-162.

유봉길, 「항의문」, p. 195.

윤경호, 「국제연합 용초도 포로수용소 소장에게 보낸 편지」, 1953년 4월 6일, p. 178.

_____, 「항의문」, 1953년 5월 16일, p. 65.

저구리 B수용소, 「항의문」, 1953년 4월 2일, p. 209.

「포로 항의문」, p. 197.

최성삼, 「항의문」, p. 186.

RG 554, Entry A1, 224, POW Incident Investigation Records 1950-1953, Box 1-30, "POW Division PMS File", No. 200-260.

RG 554, Entry A1, 108, Box 1, Reports Broadcast 8. 18. 1951 – 10. 5. 1951, "Weekly Reports Radio".

문화선전성편, 『인민의 노래』 6권, 평양: 문화선전성, 1950.

「미제의 봉암도 포로학살 사건으로 영국의회 대혼란」, 『민주조선』 1952. 12. 26.

「봉암도의 포로를 대량학살한 미군의 만행을 세계여론 규탄」, 『로동신문』, 1952. 12. 25

북조선음악동맹 編, 『조쏘 가곡 100곡집』, 평양: 북조선음악동맹, 1949.

조선인민군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인민군 군가집』 1, 평양, 1950.

「한국전쟁 중 동양인 공산주의포로의 관리와 경비에 관한 연구」, 『거제근현대문헌 총서』 6, 2021.

Osborne, M. Lee, Life has Loveliness to Sell, A Sort of Autobiography (Edward Freimuth Collection), Okinawa National Archive, 1981.

2. 이차 자료

김병섭 외, 「6·25전쟁 초기 기독교의용대의 창설과정(上)」, 『신학과 현장』 26, 목원대 신학연구소, 2006, 215-240면; 『기독교사상』, 762, 2022년 6월호에서 재인용.

김학재,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 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림』 36, 수선사학회, 2010, 141-178면.
성강현, 『6.25 전쟁시기 포로 수용소와 포로들의 일상생활』, 선인 2022.
오세희, 『65 포로수용소』, 대구: 만인사, 2000.
이경분a, 「6.25전쟁기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음악—냉전이데올로기와 노래」, 『軍史』 1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1-46면.
이경분b, 「포로를 향한 음악—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기 라디오방송음악과 프로파간다」, 『동북아역사논총』 76, 동북아역사재단, 2022, 255-294면.
이 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부산: 국제신보사출판국, 1952.
張澤石저, 손준식역,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전갑생 엮음・해제, 『거제근현대문헌총서』 6, 선인 2016.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2, 고려원 1991.
최태만,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사이 이쾌대의 행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3, 2017, 169-192면.

3. 인터넷 자료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85회 한국전쟁과 포로 2부 철조망 속의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uK3bnKMxM5w(검색일 2022.9.5.)
〈빨찌산의 노래〉, 작사 김순석, 작곡 박한규
: https://www.youtube.com/watch?v=SMLqfp0eN98 (검색일: 2022.8.31.)
〈아무르 파르티잔의 노래〉
: https://www.youtube.com/watch?v=ntN5iPT03IY (검색일 2022.8.31.)
〈적기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83
(검색일 2022.12.16.)
"〈실미도〉 '적기가'의 유래와 역사를 찾아서", 〈미디어 오늘〉, 2004.3.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26183
(검색일 2022. 12.18.)

【Abstract】

Forbidden Songs as a means to control the POWs : A Study on Music in the UN POW camps during the Korean War

LEE, Kyungboon*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prohibited songs established by the UN camp authorities for strong prisoner control.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d what songs were banned from prisoners, what background the prohibited song regulations appeared. It also analyzed the ambiguity of prohibited song regulations, as an example, the Pongamdo Incident, which caused hundreds of casualties, was dealt with in detail.

The Yongchodo POW camp implemented a five-song allowance rule that improved the ambiguity of the prohibited song regulation, but rather, it turned out that the song was a strong means of control to POWs continued to complain and protest.

In conclusion, while the role of songs by the unarmed POWs in the Koje Island POW camp as a means of resisting the camp authorities was very important, the U.N. military's "excessive response" to the song resulted in a "high political value" of songs that was unimaginable in previous wars. In other word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 POW camp during the Korean War is the conflict between the camp authorities and prisoners over the song, as shown by the enactment of the banned song and the resulting bloodshed.

Keywords: Pongam-do, Yongcho-do, Koje POW camp, The prohibited songs, Songs of POW's, Protest letter by POWs, Korean War.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0.

* Visiting Researcher, Inst.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